

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3. 3. 23.(목) 조간 2023. 3. 22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3. 3. 22.(수) 06:00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업기자재관리과	책임자	과 장 강동양 (044-200-5603)
		담당자	사무관 이강은 (044-200-5608)

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!

-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사전 준비 척! 척!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*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업자진흥원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.

*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

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, 현장 설명회,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한편,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* 어구를 대상으로 '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.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,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, 민간·NGO 단체 협업,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*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,320만개 사용하며,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. 이중 상당량(118만개)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됨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.”라며, “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 1 어구보증금제 개요

□ 정리 및 목적

- (정의)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는 제도
- (목적) 보증금제는 제품이 사용된 후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유인

□ 주요 특징

- (이중성) 잠재적 해양환경 오염 유발에 대한 수수료이면서 동시에 폐어구를 육상으로 되가져와 폐기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
- (의무이행 담보)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「부담금관리기본법*」 적용 제외
 - * 행정주체가 분담금,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
- (저비용 고효율) 자발적 회수 유인책은 감시, 단속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, 수거비 단가*도 절감되어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
 - * 침적된 폐어구의 수거·처리 비용(300만원/톤) 중 약 90%(270만원/톤)는 해상 수거 비용이며 약 10%는 처리 비용으로 소요됨

□ 유형

- 보증금을 제품이 회수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재활용될 때 회수·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

	소비자 반환 보증금	회수·재활용업체 반환 보증금
환불 대상	제품을 반환하는 소비자	제품을 회수·재활용하는 업체
목 적	무단 투기, 방치 등을 예방	재활용률 제고
사 례	1회용컵 보증금, 어구보증금	배터리 요금, 전자제품 수수료(미국)

□ 디자인 / 색상



□ 부착 방법(예시)

